

상장이후 임직원 유의사항

직원 설명 자료

모트렉스
2017년 9월 5일

상장 이후 임직원 유의사항 개요

-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
- 임원/주요주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
-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
- 시세조정행위 규제
- 부정거래행위 등

1.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

- 임직원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할 경우, 발생한 차익을 반환해야 합니다. (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)

제도의 의의 및 예외사항

- **의의**
 -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, 부당한 단기매매차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함
- **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사항**
 - 중자 취득한 경우 (우리사주 우선배정, 일반공모 청약)
 - 주식매수선택권(Stock Option)의 행사
 - 소유하고 있던 주식, BW, CB 등

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

■ 반환절차

증선위

- 증선위의 자체 스크링 진행
- 기타 회사주주들의 개별통지

회사통지

- 차익반환의 원 책임은 회사임

회사 홈페이지
메인화면 공지

- 회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재
- 거래소 자율공시
- 발견일로부터 2년간 개재/공시

2. 임원/주요주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

- 상장사 임원/주요주주가 자사주식을 매수/매도한 경우, 5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제도의의 및 제재사항

- 의의**
 - 회사의 비공개 주요정보 접근이 용이한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회사주식의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 배제
- 제재사항**
 - 조사요구 불응 : 3년이하 징역 / 1억원 이하 벌금
 - 허위 / 미보고 : 1년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
 - 행정조치 : 금융위의 시정명령, 고발, 수사기관 통보, 경고/주의 조치 가능

대상자 및 대상증권

- 대상자**
 - 주총에서 선임된 회사의 이사, 감사, 사실상 임원 (사실상 임원 : 명예회장, 회장, 사장, 전무, 이사등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자)
 - 계열회사의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
 - 주요주주(10%이상보유, 사실상의 지배주주)
- 대상증권**
 -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(주) 등
(주) 주식, CB, BW, EB, 이익참가부사채

3.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

-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제도의의 및 제재사항

- **의의**
 - 거래당사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를 방지,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재고
- **금지행위**
 - 미공개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이용하게하는 경우

대상자 및 대상증권

- **대상자**
 - 주총에서 선임된 회사의 이사, 감사, 사실상 임원 (사실상 임원 : 명예회장, 회장, 사장, 전무, 이사등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자)
 - 계열회사의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
 - 주요주주(10%이상보유, 사실상의 지배주주)
- **대상증권**
 -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(주) 등
(주) 주식, CB, BW, EB, 이익참가부사채

4. 시세조정행위 규제

- 위장거래등을 통한 시세조정행위 및 사기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제도의의 및 제재사항

- **의의**
 - 거래동향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조작행위 규제
- **형사책임**
 -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
 - 부당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 상당의 벌금
- **민사배상책임**
 - 시세조정행위 대해서는 증권집당소성법이 적용

규제대상 행위

- **규제대상 시세조정행위**
 - 위장거래, 통정매매, 가장매매, 위탁 및 수탁행위 등
 -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
 - 허위표시등 의한 시세조정
 -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
 - 현, 선 연계 시세조정행위 규제

5. 부정거래행위 등

- 모든 투자자의 부정거래행위를 통한 매매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금지행위

▪ 규제대상행위

-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
- 중요사항 거짓유포, 누락, 위조 행위
-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거짓 시세이용 행위
- 시세변동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, 위계의 사용
-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매매 행위

규제대상 행위

▪ 규제대상 시세조정행위

- 위장거래, 통정매매, 가장매매, 위탁 및 수탁행위 등
-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
- 허위표시등 의한 시세조정
-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
- 현, 선 연계 시세조정행위 규제

Appendix.

-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
- 임원/주요주주 등의 주식 소유 상황보고제도
- 미공개정보 이용행위
- 시세조정행위 금지
- 부정거래행위 금지

■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

- "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" 에서 "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" 을 이익으로 산정

$$\text{단기매매차익} = (\text{매도단가} - \text{매수단가}) \times \text{매매일치수량} - (\text{매매거래수수료} + \text{증권거래세액})$$

※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을 매수후 6개월 이내 매도에 의한 이익만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나, 매도후 6개월 이내 매수에 의한 이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

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(단기매매차익의 공시)

-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[임원(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]

- 단기매매차익 금액(임원별, 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

- 중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

-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
- 해당 법인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는 그 법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법인이 요구를 받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

Appendix- 임원/주요주주 등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제도

■ 보고대상증권 (자본시장법 제172조,제173조)

-임원,주요주주보고 대상증권인 “특정증권등”이란 그 법인이 발생한 증권(주1)(순수채무증권은 제외),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, 교환사채권,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함

(주1) 지분증권, 전환사채, 시주인수권부사채, 이익참가부사채, 교환사채

■ 보고의무자 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2항)

-임원, 주요주주보고 대상자인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(사외이사 포함), 감사 및 사실상 임원 [상법 제401조의2제1항(업무집행지시자 등) 해당자(주2)]을 말함

(주2)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, 회장, 사장, 전무,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

■ 보고기한 및 기준일 (자본시장법 제173조)

-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현황을 임원,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(영업일 기준)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함

[예시참조]

09.11.23(월)	11.24(화)	11.25(수)	11.26(목)	11.27(금)	11.28(토)	11.29(일)	11.30(월)	12.01(화)
D	공휴일제외	D + 1	D + 2	D + 3	토요일제외	공휴일제외	D + 4	D + 5
보고의무 발생일	보고기한 (5일)							

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자(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)

-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,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,인가,지도,감독,그 밖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,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위 항들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위 항들의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

● 공개매수 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자 (자본시장법 제174조 2항)

-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해당 대상자 중 공개매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
▪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(자본시장법 제176조 1항)

-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도하는 행위
-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짚 후 매수하는 행위
-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
- 위 항들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
-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
-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

■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(자본시장법 제178조)

-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
-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,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-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
-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, 위계의 사용,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■ 위반효과(자본시장법 제433조 1항)

-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-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배상책임이 부과된다.